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05

발의연월일: 2024. 7. 11.

발 의 자: 박지혜・위성곤・이개호

박해철 · 조인철 · 강준현

정일영 · 정진욱 · 오세희

박수현ㆍ허 영ㆍ김용만

이재관 • 이용우 • 문대림

황명선 • 이재강 • 이광희

박희승 • 박용갑 의원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로당에서의 급식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마다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국가가 경로 당의 급식 제공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별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경로당에 보조할 수 있는 비용에 현행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연료비에 더하여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경로당이 자체 노력으로 보조되는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양곡 구입비 등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급식 운영에 재량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로 하고, 같은 항에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 (副食) 구입비
- 2. 냉난방 비용
- 3. 취사용 연료비
- 4.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
-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 본문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1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경로당(경로당을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자체 노력으로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절감하여 교부된 보조금이 결산에 따라 확정된 보조금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경로당이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이 확정된 회계

연도에 한하여 제1항 각 호의 비용 중 다른 비용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 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입비 등의 보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 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 -----다음 각 곡관리법 | 에 따른 정부관리양 |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곡을 포함한다)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신 설>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副食) 구입비 <신 설> 2. 냉난방 비용 <u><신</u>설> 3. 취사용 연료비 4.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 <신 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삭 제>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 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신 설> <u>률」 제22조제1항</u> 및 제31조제 2항 본문과 「지방자치단체 보 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 조 및 제31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경로당(경로당을 운

영하는 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자체 노력으로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절감하여 교부된 보조금이 결산에 따라 확정된 보조금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경로당이 그 초 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보조금이 확정된 회계연도에 한하여 제1항 각 호의 비용 중다른 비용에 이를 사용할 수있다.